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수 입
인 지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담당	책임자	관리자	부점장

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서(기업용)

20 년 월 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본인



주소

본인이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매출채권거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매출채권거래의 범위

- ① 이 약정에서 매출채권거래라 함은 매출채권(어음채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매입 · 매출채권의 관리 회수 · 매출채권금융 기타 이를
에 부수하는 회계 · 전산정보처리 · 경영상담 등 업무를 포함한 종합적인 거래를 말합니다.
- ② 은행은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매출채권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하여 이 약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의한 거래범위내에서 거래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은 은행이 택하는 것에 한합니다.

제2조 유사계약의 협의

본인이 은행 아닌 다른 사람과 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여 은행이 이 약정의 목적달성을 지장
없음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에 하기로 합니다.

제3조 거래조건

이 계약에 의한 매출채권거래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에
“√” 표시합니다.)



여신과목	외상매출채권매입(팩토링)	거래구분	<input type="checkbox"/> 한도거래	<input type="checkbox"/> 건별거래
여신(한도)금액	금	원 (할부채권 : 금 원)		
여신개시일	년 월 일	여신기간 만료일	년 월 일	
수수료율	<input type="checkbox"/> 정구	<input type="checkbox"/> 고정	여신기간만료일까지 연 %	
		<input type="checkbox"/> 변동	(연 %)	
	<input type="checkbox"/> 미정구			
상환청구권 유무	<input type="checkbox"/> 상환청구권이 있는 조건(with recourse)			
	<input type="checkbox"/> 상환청구권이 없는 조건(without recourse)			
지연배상금률	지연배상금률은 제3조에 의해 결정된 수수료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 단, 최고지연배상금률은 연 %로 합니다. 연체기간이 ()개월 이하인 경우 : 연 % 연체기간이 ()개월 이하인 경우 : 연 % 연체기간이 ()개월 초과인 경우 : 연 %			
수수료 및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매출채권 양도 및 양도대전 지급시기	<input type="checkbox"/> 위 여신거래기간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은행으로 양도하기로 하며, 그 대전의 지급시기는 제9조에 따라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환방법	<input type="checkbox"/>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의 회수금으로 상환하기로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출채권의 양도시에 매출채권의 만기일까지 선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최초에는 매출채권의 양도시에, 그 후의 수수료는 지급한 수수료의 계산 최종일에 ()개월 단위로 선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제4조 수수료

본인은 이약정에 의한 매출채권거래에 대한 보수로서 제7조에 의하여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한 수수료지급시기에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수수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 및 계산방법에 따라 수수료 지급기일 익일부터 이행일 까지 그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5조 감액 · 정지

- ① 한도거래 및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 ·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곧 갚아야 합니다.
 - 1. 국가경제 ·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의 구체적인 사유
 - 가.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나. 외환유동성 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 은행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 조절대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 라. 기타 위의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 ·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 2.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의 구체적인 사유
 - 가.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경우
 - 나. 경영실권자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어려운 경우
 - 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
 - 라. 신문, TV 등 공신력 있는 매스미디어에 본인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 마. 본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 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 · 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6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계약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7조 매출채권의 양도

- ① 본인은 제1조 제3항에 의하여 거래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이 발생할 때마다 이 약정에 의한 매출거래로서 은행에게 양도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매출채권(어음채권 제외)을 양도한 때에는 본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서를 받아 확정일자를 얻어 은행에 제출하고 어음 채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본인이 은행앞으로 배서하여 교부합니다.
- ③ 제2항의 채무자의 채권양도승낙서에 관하여는 은행이 그 제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은행은 언제든지 그 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또 본인은 은행의 승인을 얻어 채무자 앞으로 배당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고 그 원본을 제출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④ 은행은 제1항의 매출채권을 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청구권 있는 매입방식 또는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하기로 합니다.

제8조 매출채권의 회수 및 협력

- ① 은행은 제7조에 의하여 양수한 매출채권을 그 권리자로서 직접 관리 회수합니다. 그러나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은행이 채권양도승낙서 제출을 유예한 경우에는 본인이 은행을 대리하여 매출채권을 관리 회수하고 회수한 대전을 곧 은행에게 인도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매출채권 회수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은 가능한 모든 방법에 의하여 그 회수의 실현에 협력합니다.

제9조 매출채권대전의 지급시기

본인은 은행이 제7조에 의하여 양수한 매출채권의 대전을 은행이 정한 계산방법에 의한 매출채권 평균 만기일에 지급받기로 합니다.

제10조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양도대전 지급

은행이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한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관한 사유로 말미암아 각기 상환기일에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 거절된 때에는 본인은 은행으로부터 그 매출채권 대전을 지급받습니다.

제11조 매출채권의 환매

- ① 은행이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한 매출채권이 상품의 수량 · 품질 · 가격 등 상거래관계로 말미암은 사유에 의하여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당연히, 또 지급거절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본인은 곧 매출채권의 환매의무를 집니다.
- ② 은행이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상환청구권 있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한 매출채권이 각기 상환기일에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거절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그 지급거절 원인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관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본인은 곧 그 매출채권 및 그와 채무자가 같은 다른 매출채권의 환매의무를 집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본인이 환매의무를 진 경우에는 은행은 그 매출채권을 본인 앞으로 재양도하는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이 경우 매출채권 재양도에 관한 채무자앞 통지는 본인의 비용부담으로 은행이 합니다.
- ④ 본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환매의무를 진 경우 환매의무발생 이전에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매출채권대전을 곧 상환하기로 하며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환매의무 발생일 익일부터 이행일까지의 지체일수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⑤ 제1항 제2항의 경우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해결할 책임을 집니다.

제12조 매출채권대출

- ① 제9조의 양도대전 지급시기 도래전에 본인이 용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의 거래조건 및 기타 은행이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매출채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대출의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에 “V” 표시합니다.)

여신과목	외상매출채권대출(팩토링)		
대출금액	제3조에서 정한 한도이내로 하되,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 총액의 ()% 이내로 합니다.		
대출기간	제9조에 의한 평균만기일까지로 하되, 최장 ()개월 이내로 합니다.		
이자율 지연배상금률	<input type="checkbox"/> 고정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 + ()%	<input type="checkbox"/> 대출만기일까지 연 ()%
	<input type="checkbox"/> 변동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 + ()%	<input type="checkbox"/> [변동주기 : ()개월]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지연배상금률은 제12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 단, 최고지연배상금율은 연 %로 합니다. 연체기간이 ()개월 이하인 경우 : 연 % 연체기간이 ()개월 이하인 경우 : 연 % 연체기간이 ()개월 초과인 경우 : 연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대출실행 방법	<input type="checkbox"/>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신청이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상환방법	<input type="checkbox"/> 대출만기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대전 및 회수금으로 상환하기로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이자의 지급시기 및 방법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는 대출실행일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최종일에 선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실행일에 만기일까지 선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대출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본인은 제2항에서 정한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④ 제2항의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에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란 원화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 실행 직전 영업일의 91일물 CD 유통수익률, AAA 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3개월물, 6개월물, 1년물, 3년물, 5년물), 단기코픽스금리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하고, 외화대출의 경우에는 LIBOR 1개월물, LIBOR 3개월물, LIBOR 6개월물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
 2. 각각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는 아래의 적용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 가. 91일물 CD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수익률
 - 나. 금융채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 중 3개 채권평가회사 통합표의 수익률
 - 다. 단기코픽스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금리
 - 라. LIBOR 1개월물 또는 LIBOR 3개월물 또는 LIBOR 6개월물은 IBA(ICE Benchmark Administration)가 고시하는 금리
- ⑤ 제4항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제2항에서 정한 변동주기마다 최초 대출상당일(최초 대출상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일 말일) 직전 영업일의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를 기준금리로 하여 제2항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⑥ 제2항의 이자율의 기준금리를 은행 내부기준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은행이 각 기간별 대표금리로 정한 시장금리 또는 지표금리에 자금별 특성을 반영한 스프레드 등을 감작하여 정한 내부이전가격(FTP)을 기준금리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⑦ 제2항의 이자율의 기준금리를 수신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된 수신 상품의 금리가 변동될 때마다 이를 기준금리로 하여 제2항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13조 대출금의 변제 등

- ① 본인이 제12조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매출채권에 관하여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환매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은 곧 은행에 대하여 은행 소정의 계산방법에 따라 대출금을 갚기로 하고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재양도를 받습니다.
- ② 제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발생의 경우에 있어서도 본인은 곧 은행 소정의 계산방법에 따라 모든 대출금을 갚기로 하고 매출채권의 재양도를 받습니다.
- ③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변제의무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이행일까지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4조 통지의무

본인은 은행에게 양도한 매출채권의 채무자의 재산 · 경영 · 업황 · 기타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칠 상황에 관한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은행앞으로 이를 통지합니다.

제15조 양도 · 질권설정의 금지

본인은 은행의 사전의 서면승낙없이 이 약정상의 어떠한 권리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담보권의 이전

본인은 은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곧 제7조에 의하여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 · 인적담보(근담보권을 포함합니다)를 은행 앞으로 이전하고 은행이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함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제17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20 .	20 .	20 .	20 .	20 .
부 채 비 율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비율	%	%	%	%	%
()비율	%	%	%	%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6. 자산담보부증권 발행을 위한 중요자산의 양도

③ 본인은 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8조 자료의 제출 등

① 본인은 은행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 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 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제19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준용

- ① 본인은 이 약정에 의한 거래에 관하여도 은행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제4조(비용의 부담)·제6조(담보)·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제10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제12조(어음의 제시·교부)·제13조(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제14조(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제15조(위험부담·면책조항)·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등)·제17조(자료의 성실작성의무)·제18조(통지의 효력)·제19조(회보와 조사등)·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등)·제21조(이행장소·준거법)·제22조(약관·부속약관변경)·제23조(관할법원의 합의)를 준용할 것을 승인합니다.
- ②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상 채무자는 본인,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의 채무는 이 약정에 의한 본인의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합니다.

제20조 협의사항

이 약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

제21조 기타 특약사항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인)	

